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연구

: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매절과 인세) 중심으로

박 경 철

초록

이 논문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만화작가와 업체간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고자 연구한 것이다. 표준계약서 내용 중에서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만화계약서, 만화출판계약서, 표준계약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역점 사업은 콘텐츠의 개발과 육성산업이다. 콘텐츠 중에서도 특히 만화 콘텐츠의 지원 사업 비중이 큰 이유는 만화가 원소스멀티유즈의 소스를 제공하는 주요 근간이 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그 예로 게임의 형태로 태어난 「리니지」부터

연속극으로 재탄생한 「궁」, 인터넷 만화에서 영화로 되살아나는 강풀의 「아파트」까지 만화는 인쇄매체의 시대를 벗어나 영상과 디지털매체의 시대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이처럼 만화가 원소스멀티유즈로 부각되는 이유는 스토리를 토대로 캐릭터를 전면내세우기 때문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화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자인 만화작가와 출판권자인 출판사의 권익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만화작가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침해당하고 있다. 올바른 계

약서 작성보다는 관례라는 이름 하에 구두나 약식의 계약을 하기도 하며, 지적 재산권 양도와 같은 불평등한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는 만화작가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몰라서 발생하는 측면보다는 출판사가 기업 윤리를 무시하고 이윤을 너무 앞세우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가정책으로 만화산업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외연이 확대되면 될수록 만화작가와 출판사간의 불평등 관계는 양산될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계약을 작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저작권과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반면에 저작권과 계약의 이해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가 발표되었다. 이를 만화작가와 출판사간의 표준으로 삼고 어느 한 쪽에 불리한 계약이 아닌 상생의 계약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만든 표준계약서는 일방의 권익보다는 쌍방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화작가와 출판사 양자의 입장에 불평등한 조항이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찾는 과정에서 만화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출판사는 좋은 콘텐츠를 출판하여 한국 만화산업의 근간이 튼튼해지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한 것이다.

전체 내용 중 '제 1 부 출판 계약서 1. 일반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매절)'와 '2. 일반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인세)'로 범위를 한정된 상태에서, 다시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로 한정하였다.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는 출판 계약서, 상품화권 계약서, 저작권 계약서 등의 다양한 계약서들이 있지만, 논지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만화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만을 다루려는 것이다.

제 1 부의 1장과 2장은 매절과 인세로 구분되지만 공통 조항이 많으므로 매절을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매절에 없는 인세 조항은 '인세'와 '조항'을 표시하여 인세만의 조항임을 밝힌다.

가. 만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저작권을 살펴본다.

나.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다.

다. 매절과 인세의 용어에 공통적인 조항 중에서 용어와 문장의 통일성을 분석한다.

라. 매절과 인세의 조항을 비교 연구하여 양자간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지, 공평한지를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한다.

II. 저작권과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1. 저작권의 이해

계약서하면 부동산 매매 시의 계약을 쉽게 떠올린다. 이때의 계약은 부동산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서가 된다. 그러나 만화 계약서가 부동산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계약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무관한 저작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시 불평등한 계약을 하지 않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 저작권의 이해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저작물은 문학, 학술, 예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로서 대표적으로 만화를 들 수 있다. 만화의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만화작가를 말한다.

저작권의 기본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1) 복제 : 인쇄·사진·복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출판만화는 인쇄에 의해 대량으로 복제된다.

2) 배포 : 저작물의 원 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출판만화는 서점에서 판매 및 대본소에서 대여된다.

3) 발행 : 저작물을 이용자의 수요를 위하여 복

제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표 :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작물의 창작과 관련한 시비가 있을 경우, 공표 날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전송 :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상의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만화가 있다.

6) 편집저작물 :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사보처럼 만화가 한 두 페이지 들어가거나 삽화로 삽입될 경우, 사보는 글과 만화, 사진 등으로 이루어진 편집저작물이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으로 만화작가는 저작권에 속하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에 의해, 만화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출판사의 자의적인 편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이다.

7) 공동저작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만화작가의 만화와 스토리작가의 글에 의해 만들어진 만화가 이에 해당한다.¹⁾

나.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써 저작한 시점에서 발생한다.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

1) 저작권 용어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용어 해설을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하는 그 순간에 발생함을 말한다.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권리의 침해 형태에 따라 '저작인격권' 침해 또는 '저작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1) 저작인격권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 전속하는 권리로서, 저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 양도, 상속이 불가능하다. 재산의 권리가 매매 또는 양도에 의해 타인에게 넘어가더라도 만화의 저작인격권은 만화작가의 것이다. 예로 피카소의 작품이 A에게 팔리면,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는 A지만 저작인격권의 권리자는 피카소이다. 이런 이유로 저작재산권자인 A는 피카소의 작품을 피카소가 아닌 A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A는 저작재산권만을 소유한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으로 구성된다.

가) 공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 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①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 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즉 만화 원고를 출판사에서 편집하여 출판한 경우, 공표에 해당하며 만화 원고도 공표된 것이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만화 원고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받은 이가 저작물을 공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제목, 내용,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출

판사가 만화작가의 동의 없이 책의 제목이나 내용, 형식을 변경할 수 없는 이유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때문이다.

다)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표에 있어서 저작자는 실명을 표시할 권리(실명 또는 필명)를 가진다. 출판사는 만화작가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의 실명 또는 필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금지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권리이다.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작인격권과 가장 다른 부분이다. 만화작가의 허락 없이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시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가) 복제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나)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 작품이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 전송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라) 전시권 : 저작자는 저작물 등의 원 작품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마) 공연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바) 방송권 : 저작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사)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저작자는 저작

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아) 출판권 :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책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을 출판이라 하며 복제·배포권의 부분적인 권리이다. 저작자인 만화작가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출판사는 저작자와의 계약에 의해 출판권을 설정 받은 '출판권자'가 되며,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의 이해

문화콘텐츠 진흥·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진흥원 측의 말을 인용하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을 구상해 왔다. '표준 계약서' 매뉴얼도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있고, 업체들의 계약 방식은 분쟁 회피를 위해 더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 업체들은 인력과 자금의 한계로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일쑤다. 선도 업체들도 계약관계는 기업 비밀인 탓에 공유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계약 분야 지침서로 만든 것이 '표준 계약서' 이다.²⁾

위의 내용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중소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장에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선도 업체보다 약자인 중소 업체를 지원하고자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나아가 저작자의 권익까지 배려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저작자가 중소 업체일수도 있지만 대다수 경우는 만화작가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만화작가는 출판사에 대해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서 사소한 부분조차 배려하지 않으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2005년 2월에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된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의 국내외 산업화에 대비하여 계약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는 차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제 1 부 출판 계약서

1.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 (매절)
2.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 (인세)
3. 연재 만화 출판 계약서
4. 출판권 설정계약서
5. 해외 만화 출판 계약서

제 2 부 상품화권 계약서

1. 국내 상품화권 계약서
2. 해외 상품화권 계약서

제 3 부 저작권 및 판권 계약서

1. 이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
2. 스토리 판권 설정 계약서
3. 해외 저작물의 국내 판권 설정계약서

제 4 부 온라인 관련 계약서

1. 온라인 전송관련 계약서
2. 해외 온라인 전송 관련 계약서

제 5 부 외주 디자인 및 편집 계약서

2) 이택수, <디지털타임스>(서울:디지털타임스, 2006-02-06)

1. 외주 디자인 및 편집 계약서

2. 해외 디자인 및 편집 계약서

제 6 부 번역 계약서

제 7 부 기타 계약서

1. 온라인 만화 사이트 이용 계약서

2. 만화 원고 제출 계약서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는 만화 콘텐츠와 관련된 계약서를 망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까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계약 상황에 맞는 계약서를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만화의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계약 형태를 망라한 계약서로써 저작자와 국내업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표준이 될 것이다.

Ⅲ.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매절과 인세)

1.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의 통일성

계약서를 세분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은 통일시켜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용어가 다르거나 문장이 약간 바뀌어 있다면, 계약의 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

가. 차례와 본문 제목의 통일성

차례 제목인 '1.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매절)'는 본문 제목에서 '1.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형태 계약서(매절)'³⁾이다. 차례의 '출판 계약서'가 본문에서는 '출판 형태 계약서'로 명칭이 달라진다.

차례 제목인 '2.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인세)'는 본문 제목에서 '2.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권 설정 계약서(인세)'이다. 차례의 '출판 계약서'가 본문에서는 '출판권 설정 계약서'로 명칭이 달라진다. 이처럼 본문과 차례 제목이 다르면 혼동을 주므로 반드시 통일시켜야 한다.

1장과 2장의 본문 제목이 각각 '출판 형태 계약서'와 '출판권 설정 계약서'로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 차례 제목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출판 계약서'로 표기해야 하지만 차례와 본문 제목을 공히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1장 본문 제목 밑에는 '제목(가제), 작가, 기획자'를 사용하고, 2장에는 '제목(가제), 저자, 기획자'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자의 호칭을 '작가'와 '저자'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용어의 통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1장에서 '출판사가 출간할 위 저작물을 위해'는 2장에서 '이 출간할 위 저작물을 위해'로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의 여지를 만든다는 점이다.

나. 내용의 통일성

3) 본문 제목은 '1.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형태 계약서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매절)'이다.

제3조 '등록할 수 있으면'은 '있으며'로 수정하여야 문맥이 맞다. 제4조 '본 도서의 본 도서의 출판 후'는 동일한 용어가 중복되고 있는데, '본 도서의 출판 후'가 맞는 표기이다.

제7조 '워드프로세싱 원고로 한다.'는 부분에서 워드프로세싱은 만화원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싱을 삭제한 '원고로 한다.'로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자동으로 최소화되며'는 '자동으로 취소되며'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 수치의 통일성

1장 제4조의 '출판 후 5년 내'와 '___부의 ___'는 2장의 '출판 후 ___년 내'와 '___만부의 ___'와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를 '출판 후 ___년 내'와 '___부의 ___'로 통일시켜야 한다. 매절과 인세의 차이를 떠나 숫자를 기입해야 하는 부분은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4조의 '원고료의 00%'는 '원고료의 ___%'로 수정해야 한다. 수치를 기입해야 하는 자리는 빈 칸 밑에 줄을 그어두는 방식으로 통일시킨다.

1장 제23조(계약의 갱신)에서 '만료일 3개월', '유효기간이 ___년'은 2장 제25조(계약의 갱신)에서 '만료일 __개월', '유효기간이 3년'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매절에서는 만료일 3개월로 명시하고 연장기간은 비워두는 형태를 취하고, 인세에서는 만료일을 비워두고 연장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것은 통일을 일부터 하지 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매절과 인세에 따른 어느 한쪽의 유리한 계약 방식을 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 표기의 통일성

제5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 및 초판발행 후 ___년간 존속한다.

② 제2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제한의 기간도 ___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수정 전)

제5조의 두 번째 문장인 '② 제 23조에 의한 갱신'에서 ②의 사용은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인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존속한다.'를 ①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① 표기 없이 ②만을 보고 앞 문장을 ①로 이해하기에는 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표기에 따른 문제는 2장 제26조에서 사용하는 '제1항' 표기를 사용하여 구분하는 것이 전체적인 통일성에 맞다.

제5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본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일로부터 초판 발행일까지 및 초판발행 후 ___년간 존속한다.

제1항. 제23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제한의 기간도 ___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수정 후)

2장 제26조에서는 '가'와 '나'가 등장하는데 이는 경우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 바로 밑 문장의 제1항 '가'호와 다음의 제1항 '나'와 '다'호에서 두 번째 제1항은 제2항으로, '나'와 '다'호는 '나'호로 수정하여야 한다.

가. '을'이 판단하기에 시장 변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제의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나. '갑'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집필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 '가'호의 사항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항 '나'와 '다'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5배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본 저작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실비용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정 전)

가. '을'이 판단하기에 시장 변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제의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나. '갑'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집필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 '가'호의 사항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항 '나'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5배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본 저작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실비용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정 후)

차례의 제목인 '1.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매절)와 '2. 일반 도서 및 단행본 출판 계약서(인세)'에서 나타나는 통일성은 살펴본바와 같이 본문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절과 인세의 공통되는 용어와 문장을 통일시키면 구분이 더 분명해진다. 통일된 용어와 문장에 의해 매절과 인세의 어느 한쪽을 이해하면 다른 쪽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 1 부 1장과 2장에서 드러

나는 무통일성은 아쉬운 부분이다.

2. 만화 출판권 설정 계약서의 연구

계약서는 양자간의 합일에 의하여 계약되는 일방 계약이 아닌 쌍방 계약이다. 그러나 현실은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엄연히 존재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하며, 계약서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유명 만화작가를 제외한 대다수 만화작가는 출판사에 매여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제2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의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수정 전)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제 및 배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출판권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갑'과 '을' 사이의 소송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복제 및 배포'를 '출판권'으로 변경하면,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의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줄임)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본 저작물의 출판권에 관하여 독점

적인 권리를 갖는다.(수정 후)

나. 제4조 (배타적 이용)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조금이라도 비슷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정 전)

문제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유사한'을 들 수 있다. 저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장르 상 일치할 수도 있고, 연애이야기처럼 일상적인 소재를 이야기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저작물로 태어나기도 한다. 또한 저작자만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캐릭터로 저작물을 그리게 된다.

제호 및 내용의 전부(또는 일부)는 당연한 부분이나 동일은 전부와 같은 뜻이라고 볼 때 중복사용이며, '조금이라도'는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추상적인 용어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양자간의 갈등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와 '유사한'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비슷한'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야한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갑'은 본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비슷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정 후)

'갑'은 본 도서의 본 도서의 출판 후 5년 내에는 '을'의 허락 없이 타 출판사에 유사한 도서를 저술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__부의 __%에 해당하는 인세를 __개월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해당도서의 판권은 계속해서 '을'이 갖는다.(수정 전)

매절에서 5년이라는 기간동안 유사한 도서에 대해 저술을 금한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통상 소송에서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3년으로 판결하는 것을 볼 때, 5년의 규정을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두거나 3년으로 정하여야 한다.

매절 계약에서 '갑'이 원고료보다 많은 인세를 '을'에게 배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을'이 출판권을 계속 갖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 매절이라면 원고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상을 책정하거나, '갑'의 배상이 원고료를 초과할 경우 __개월 이후(을의 손해를 보장받는 기간) '을'은 출판권을 잃고 '갑'에게 귀속되어야한다. 이는 계약 해지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갑'은 본 도서의 출판 후 __년 내에는 '을'의 허락 없이 타 출판사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비슷한 도서를 저술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__부의 __%에 해당하는 인세를 __개월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 범위가 원고료를 초과할 경우 배상 후 __개월 이후에는 계약 해지되며 해당 도서의 출판권은 '갑'이 갖는다.(수정 후)

참고로 만화작가가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출판사와 계약하였지만, 해당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출판할 의사가 없거나 시리즈를 타 만화작가에게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유사한 도서'

처럼 자의적인 해석의 범위가 넓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만화작가는 계약서의 항목과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제6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__일 이내에 (또는 __년 __월 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이하 ‘완전원고’라 줄임)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수정 전)

문제되는 용어를 살펴보면, ‘필요하고도 완전한’, ‘선량한’, ‘완전원고’를 들 수 있다. ‘필요하고도 완전한’처럼 해석에 따라 포괄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 용어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양자가 해석의 다양성이 제기되지 않게 해야 한다.

‘갑’은 본 계약일로부터 __일 이내에 (또는 __년 __월 __일까지) 본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한 자료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수정 후)

‘완전원고’와 같은 용어는 해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삭제해도 무방한 이유는 출판사의 원고에 대한 불안을 다음의 ‘수정’에서 불식시키기 때문이다.

‘을’은 계획한 집필 목표에 따라 ‘갑’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도서출간에 필요한 ‘을’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수정 전)

원고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출판사의 계속된 스토리 수정 요구로 인해 원고 마감일이 계속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출판사의 생각에 따라 스토리가 수시로 변경되고 다시 그려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정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판사의 무리한 요구로 늦춰진 원고 마감일에 대한 책임을 만화작가가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을’은 계획한 집필 목표에 따라 ‘갑’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도서출간에 필요한 ‘을’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단 ‘을’의 요구는 __번 이내로 제한하며 원고 마감일 __개월 전까지로 제한한다.(수정 후)

다음은 손해배상의 개념이며 ‘갑’이 ‘을’에게 원고료의 차감 형태로 배상하는 내용이다. 배상은 계약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용 중 ‘을’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인정하는 주체가 계약의 일방이기에 ‘갑’의 의견과 상관없이 ‘을’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자의적 해석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만든다. 만일 ‘을’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면 ‘인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수정 전과 수정 후의 예이다.

‘을’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원고 및 출판을 위한 관련 자료의 인도 기간이 늦어져 출간이 지연될 경우 그 날수만큼 원고료를

차감 지급한다.(수정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원고 및 출판을 위한 관련 자료의 인도 기간이 늦어져 '을'의 출간이 지연될 경우 그 날수만큼 원고료를 차감 지급한다.(수정 후)

라. 제8조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본 저작물의 내용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와 '갑'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해결이 원만치 않아 법원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갑'은 소송내용을 '을'에게 고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갑'이 책임진다.(수정 전)

어이없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 저작권 소송이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갑'에게 전과시킨 내용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자'이다. '마시마로'처럼 사실관계가 확실한 캐릭터에 대해서도 소송이 휘말린 예가 있음을 상기할 경우, 소송의 모든 책임을 '갑'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또한 출판사의 요구에 의하여 저작물의 내용이 구성될 경우, 내용에 대한 책임은 출판사에 기인한다. 이러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가 정해져야 한다.

본 저작물의 내용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3

자와 '갑'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저작물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원만치 않아 법원소송으로까지 진행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갑'과 '을'은 소송내용을 양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일체는 '을'이 책임지고 '갑'의 원고료에서 차감한다.(수정 후)

마. 제9조 (발행의 의무와 시한)

'을'은 '갑'으로부터 전제에 의한 완전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안에 본 저작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수정 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완전원고'는 원고, '발행'은 출판으로 수정해야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원고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__개월 안에 본 저작물을 출판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수정 후)

아래 내용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양자간의 책임과 권리의 공평성 문제이다. 제6조에서 '을'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갑'이 그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 원고료를 차감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제9조에서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갑'과 '을'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같은 지 묻고 싶다. 제9조와 형평성을

맞추려면 제6조의 수정된 다음 내용에 동일한 부분인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를 추가해야한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이다.

'을'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원고 및 출판을 위한 관련 자료의 인도 기간이 늦어져 출간이 지연될 경우 그 날수만큼 원고료를 차감 지급한다.(수정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원고 및 출판을 위한 관련 자료의 인도 기간이 늦어져 '을'의 출간이 지연될 경우 그 날수만큼 원고료를 차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수정 후)

바. 제10조 (교정의 책임)

본 저작물의 '기술상의 교정'과 검수, '문법상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갑'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을'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을'이 해당 도서의 출간이전까지 본 저작물의 교정을 요구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수정 전)

첫 번째 문장의 '요청할 수도 있다'는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해야한다. '도'를 붙인 것만으로도 해석의 범위가 넓어진다. 두 번째 문장의 '제1항의 규정'이란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제1항. 본 저작물의 '기술상의 교정과 검수', '문법상의 교정'에 관한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갑'에게 있다. 다만, '갑'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을'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을'이 해당 도서의 출간이전까지 본 저작물의 교정을 요구할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수정 후)

다음은 인세의 제10조에만 있는 추가 내용이다.

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지 못해 제3자로 하여금 추가작업을 요했을 경우 추가 비용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수정 전)

'갑'의 불성실한 원고나 인도 기간을 어기는 일로 인하여 '을'이 추가작업을 요할 경우 '갑'에게 고지하고 추가 비용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계속되는 재수정 요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거나 '을'의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갑'의 동의 없이 추가작업을 진행할 경우 추가비용은 '을'이 책임지어야 한다.

'갑'의 불성실한 원고나 인도 기간을 어기는 일로 인하여 '을'이 추가작업을 요할 경우 '갑'에게 _일 전에 고지하고 추가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을'의 계속되는 재수정 요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거나 '을'의 사정에 의해 제3자에게 '갑'의 동의 없이 추가작업을 진행할 경우 추

가비용은 '을'이 책임지어야 한다.(수정 후)

사. 제11조 (비용의 부담)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산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수정 전)

'갑'이 손해를 감수하고 원고의 수정이나 증감을 할 경우는 드물지만 '을'의 사정에 의한 원고의 연속되는 재수정, 이를 이유로 한 원고료 미지급과 원 계획에 없는 원고의 증감 등에 대한 책임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본 저작물의 저작에 필요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고, '갑'의 요청에 따른 수정, 증감 등에 의하여 통산의 제작비를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는 '을'은 그 초과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을'의 요청에 따른 원고의 __번 이상의 재수정, 이를 이유로 한 원고료 미지급 및 '을'의 증감 요구에 의한 초과되는 제작비는 '갑'이 '을'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수정 후)

아. 제15조 (매절 계약금 지급방법)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 (단, 저자가 계약금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수정 전)

만일 계약금을 원하지 않는 '갑'과 일방적인 해지를 한 '을'이 있다고 가정하면, '을'의 일방적 계

약 해지에 대한 '갑'의 손해를 계약금으로 배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이 항목은 '을'에 의해 약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단, 저자가 계약금을 책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반드시 삭제되어야한다.

'을'은 '갑'에게 계약금 __년 __월 __일까지 지급한다.(수정 후)

자. 제17조 (최소 판매 부수)

'을'은 도서 발행 후 __개월 동안 __부 이상을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판권 및 배포권을 상실하고, '갑'은 타 출판사에 새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 이 때 이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수정 전)

인세는 판매 부수와 관련이 있지만, 매절은 판매 부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매절이 아닌 인세에만 '최소 판매 부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 '갑'과 '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4조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으므로 제17조를 매절에서는 삭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인세에서 '갑'이 창작한 원고의 '을'에 의한 출판일 경우, '을'의 출판에 의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을'은 근거 사유를 '갑'에게 __개월 전까지 고지한 후, '갑'과 '을'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고지일전까지 '을'은 '갑'에게 판매 부수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판매 부수를 누락시킬 경우 '을'은 '갑'에게 부의 __%에

해당하는 인세를 배상해야 한다.

매절과 인세를 떠나 제17조가 형평성이 있기 위해서는 '최대 판매 부수' 조항을 넣어 __부 이상을 판매하였을 경우, '갑'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야 한다. 이는 계약 조항이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지 않게 하는 장치의 역할을 한다. 즉 '최대 판매 부수'를 넣기 싫다면 '최소 판매 부수'를 삭제하면 된다.

차. 제18조 (개정판, 증보판)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정 전)

발행인 출판권은 '을'에게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갑'과 '을'이 바뀌어 있는 셈이다.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개정판이나 증보판을 출판할 경우,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개정판이나 증보판을 타사를 통해 출판할 경우, 제4조 (배타적 이용)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을'의 출판권을 침해하게 된다.

'갑'이 계약기간동안 개정판이나 증보판을 타사를 통해 출판하지 않는 반면, '을'이 '갑'에게 통고 없이 출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조항이 있어야 한다.

'갑'과 '을'은 사전 동의 없이 본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수정 후)

카. 제19조 (새로운 매체의 인용) 외

본 계약으로 출간된 도서의 내용은 __의 홈페이지에서 홍보용이나 기타 도서판매의 증대를 위한 용도로 독점하여 발췌 수록함을 쌍방이 합의한다.
(수정 전)

'갑'과 '을'은 출판권 계약을 한 경우이므로 '을'이 '갑'의 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양자에게 필요하나, '독점'과 같은 용어 사용은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홍보'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 계약으로 출간된 도서의 내용은 해당 도서판매의 증대를 위하여 __의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홍보용으로 발췌 수록함을 쌍방이 합의한다.(수정 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으로 제21조 (저작권, 출판권의 양도 등)가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저작권 또는 출판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와 국외에서 출판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의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수정 전)

특별한 조항을 두지 않는 한 통상 '갑'과 '을'의 계약은 국내 출판 계약이다. '국외에서 출판함' 때문에 국외 출판 계약까지 '갑'이 동의한 것으로 '을'은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저작권의 일부인 출판권 계약을 하였으므로 계약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저작권', '국외'와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갑'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할 경우 '을'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양도받은 제3자는 '갑'의 계약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을'의 출판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을'이 제3자에게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의 경우에도 '갑'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갑' 또는 '을'이 본 출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 __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하고 양해를 구한다.(수정 후)

타. 제23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쪽에서 계약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__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수정 전)

'갑'과 '을' 양자의 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하여 __년간 연장하는 것은 '갑'의 저작권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을'은 '갑'의 출판권을 계약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에, 기간에 대한 조항은 신중히 계약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을'은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일 __개월 전에 '갑'에게 고지하고 '갑'이 계약 기간의 연장에 동의하면 유효기간이 __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되어야 한다.

이 계약은 그 기간 만료일 __개월 전까지 '을'이 '갑'에게 고지하고 '갑'이 연장에 동의하면 유효기간이 __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을'이 '갑'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만료일에 계약은 종료된다. '갑'과 '을' 양자의 협의 하에 연장되고, 연장에 따른 비용을 새로이 산정할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연장기간과 비용의 계약 조항을 덧붙인다.(수정 후)

파. 제24조 (계약의 해제)

'을'은 다음의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판단하기에 시장 변화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제의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나. '갑'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집필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 '가'호의 사항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수정 전)

위 조항의 문제는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을'의 기준에서만 본 '계약의 해제'라는 것이다. '가'와 '나'는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예시로 수정된 제1항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갑'과 '을'은 다음의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갑'과 '을' 한쪽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그 당사자에게 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을'이 지불불능이 되거나 파산, 회사 정리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유 발생과 함께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면 계약은 해지된다.

제3항. '제2항'이 발생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수정 후)

다음은 인세의 '제26조(계약의 해제)'에만 있는 내용으로, '계약금의 5배'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제1항을 제4항의 내용으로 수정하여야한다.

제1항 '나'와 '다'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5배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돌려주어야 한다. 더불어 본 저작물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실비용을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수정 전)

제4항. '제1항'에서 '갑'이 계약 위반을 한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2배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수정 후)

하. 제25조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 또는 '을'이 본 저작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한다.(수정 전)

위 조항을 매절로 해석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서가 파손되었을 때, '갑'이 '을'에게 매절 원고료를 돌려주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세일 경우에는 '을'의 손해가 크면 인세의 비율을 '갑'과 '을' 양자의 협의 하에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조정된 인세의 기간을 정하고 기간 후에는 본 계약서상의 인세로 돌아가야 한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갑'이 원고의 인도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구하고 인도 기간을 협의한다. (인세에만 해당) 재난으로 '을'이 본 출판물에 관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은 '갑'에게 고지하고 협의 하에 인세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조정된 인세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본 계약서상의 원 인세로 돌아간다.(수정 후)

차. 인세의 특이사항

제21조 (2차적 사용)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본 저작물이 번역, 번안, 연극, 영화, 방송, 녹음, 녹화 등에 2차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갑'은 그에 관한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구체적 조건에 관하여 '갑'과 협의, 결정한다.(수정 전)

출판권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의 '2차적 사용'에

관한 것이다. '2차적 사용'의 처리를 '을'에게 위임하는 것은 출판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조항이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출판권 계약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다. 삭제하거나 '2차적 사용'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른 수익에 대한 계약을 출판권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IV. 결 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는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계약서이다. 그러나 연구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통일되지 않은 용어와 문장이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계약서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문장을 통일시켜야 한다. 예로 매절과 인세 계약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와 문장에 통일성이 없다.

두 번째는 쌍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익보다는 이용자만의 권익을 대변하는 듯이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계약 시 일방이 계약 조항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은 도장을 찍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각 조항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계약서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모르고 불평등한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작물인 만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자인 만화작가가

저작권을 이해하고 있다면, 불평등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는 것을 지양하고 발전적인 형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문제제기와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가 저작권과 계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연구되고, 새로운 관점에서의 문제제기 등이 앞으로 계속되어 저작자와 업체 그리고 국가 만화산업의 표준계약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콘텐츠 비즈니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 이남훈, 장용식, 『특허·상표·의장·저작권·실용신안의 법률상담』, 법전출판사, 1998, pp.31-155.
- 양병희, 『계약서작성의 법률상담』, 법전출판사, 1998.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계약서」, <http://www.kocca.or.kr>, 2006.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http://www.copyright.or.kr>, 2006.

ABSTRACT

Study on Guidebook of Standard Agreement in Korea Cartoon Business

Park, Keong-Cheol

“Guidebook of Standard Agreement in Korea Cartoon Business” was officially announced by Korea Culture & Content Agency.

We try to make this as a standard agreement for both cartoonist and publisher through making the most of it. As this “standard agreement” is the result of government sponsored research, it ought to be used for the profits of both, cartoonist and publisher. After investigation for unequal terms if any, I tried to find other alterna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is part. The objectives of my study is as follows; first, for the circumstance in which cartoonists can be devoted to his work without any insecurity in the part of “agreement”. Second, publisher can publish more of good contents with the help of those cartoonists.

Keyword :

Cartoon Business, Standard Agreement in Korea Cartoon Business, Guidebook of Standard Agreement in Korea Cartoon Business

박경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교수

(501-759) 전남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번지

Tel : 062-230-7812

manphist@empal.com